

# 麗末鮮初 世子 朝見의 추이와 그 의미 \*

- 昌王의 親朝 요청과 恭讓王 세자의 朝見 -

윤 정 \*\*

1. 머리말
2. 昌王의 親朝 요청의 경위와 의미
  - 1) 1차 親朝(監國 승인) 요청
  - 2) 2차 親朝 요청
3. 恭讓王 즉위와 세자 朝見
  - 1) 昌王의 3차 親朝 요청과 공양왕의 즉위
  - 2) 공양왕 세자의 朝見
4. 맺음말

## 1. 머리말

몽골과 오랜 전쟁을 치르던 고려는 강화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태자(元宗)의 入朝 즉 朝見이 이루어졌다. 당시 몽골의 황제가 사망하자 원종은 쿠빌라이(세조)를 만났는데, 그 와중에 高宗이 사망하면서 원종은 사실상 고려의 국왕으로서 조현을 진행하게 되었다. 그 결과 고려와 몽골은 그동안의 적대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였다. 이후 고려와 원 사이에 國婚이 진행되어 원은 고려의 外家가 되었고, 고려의 세자 혹은 국왕은 親朝를 매개로 원에 가서 머무는 것이 관례화되었다.

\* 이 논문은 201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15S1A5A8011554).

\*\* 진주교육대학교 부교수.

실제 忠宣王은 고려에 머문 기간이 극히 짧았고 대부분의 시간을 원에 체류하면서 황제 즉위에도 개입하는 등 황실의 일원으로 활발하게 활동하였다. 이러한 구조는 원 간섭기 동안 지속되었다. 恭愍王 역시 고려에서 태어나 12세에 원으로 가서, 1349년 魯國公主와 혼인하고 1351년 귀국하여 즉위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 형태는 중국이 원·명 교체기로 접어들고 공민왕이 雙城摠管府를 공격하는 등 ‘반원’개혁을 시도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공민왕은 명과 새로운 외교관계를 수립하고자 했으나, 禤王 즉위 후 고려는 다시 北元과 통교하였고, 우왕 11년 다시 명의 책봉을 받는 등 난항을 겪었다. 우왕 14년 고려는 明의 鐵嶺衛 설치에 반발하며 요동정벌에 나섰으나 위화도회군으로 정권을 잡은 曺敏修와 李成桂는 昌王을 세우고 대명외교를 재개하였다.<sup>1)</sup> 정권 장악 후 우왕을 폐위했으나 그 아들을 왕위에 올린 것에서 드러나듯이 당시 回軍은 禤王의 失政에 따른 정권 교체라는 성격이 강했다.<sup>2)</sup>

따라서 새로 정권을 잡은 세력은 창왕으로의 국왕교체를 공포하고 안정적으로 국가를 운영할 필요가 있었다. 이에 요동정벌의 책임을 물어 崔瑩을 처벌하는 한편 명에 監國을 요청하여 창왕의 즉위를 인정받고자 하였다. 나아가 새로운 정권으로서 면모를 일신하기 위해 창왕의 親朝를 추진했는데, 『고려사』에 총 3 회의 요청이 확인된다.<sup>3)</sup> 이처럼 여러 차례 국왕의 친조를 도모한 것은 우왕 폐위와 창왕 즉위에 따른 정계의 불안을 서둘러 봉합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하지만 얼마 되지 않아 이성계 등은 조민수와 李檉 등을 제거하고 창왕을 폐위한 뒤 恭讓王을 옹립하였다.<sup>4)</sup> 그 명분은 辛旊의 후손인 우왕과 창왕을 몰아내

1) 고려말 대외관계의 변동에 대해서는 김순자, 2007 『韓國中世韓中關係史』, 혜안 참조.

2) 이성계의 여러 功業의 중 하나로 평가되던 위화도회군을 조선의 개국과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은 숙종대 태조시호 추상을 통해 공인되었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 2006 「숙종대 太祖 謚號의 追上과 政界의 인식: 조선 創業과 威化島回軍에 대한 재평가」 『東方學志』 134 참조.

3) 창왕 즉위년 10월 賀正使로 明에 파견된 李檉은 창왕의 친조를 요청하였으며(『高麗史』 권 115, 列傳28 李檉), 동년 11월에는 밀직사 姜淮伯과 밀직부사 李芳雨가 사신으로 파견되어 조현을 청하였다(『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즉위년 11월). 다음 해인 창왕 1년 6월에는 尹承順과 權近이 입조를 위해 파견되었다(『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6월).

4) 김당택, 2010 「이성계의 즉위와 공양왕」 『歷史學研究』 38(2012)『이성계와 조준·정도전의 조선왕조 개창』, 전남대출판부 재수록).

고 왕씨의 후예를 세움으로써 ‘高麗의 中興’을 이룬다는 데 있었다. 하지만 공민왕 사후 우왕이 10여 년이 넘게 재위하였고, 이성계 역시 창왕을 옹립하는 데 관여했기 때문에 갑자기 우왕이 공민왕의 자식이 아니라는 주장이 공감을 얻기는 어려웠다. 이에 명 태조(洪武帝)가 창왕의 조현을 거부한 것을 폐위의 명분으로 삼았다. 공양왕 즉위 후 세자를 입조하도록 한 것은 우왕·창왕과는 차별화된 공양왕의 정통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조현을 마친 공양왕의 세자가 고려로 돌아오고, 연이어 공양왕의 고명을 청하기 위한 사신이 출발하는 등 정권을 안정시키는 과정에서 공양왕이 폐위당하고 이성계가 즉위하였다. 결국 고명을 요청하러 가던 사신은 중도에서 돌아왔다. 이는 공양왕 즉위에 내세웠던 왕조 중흥의 명분을 퇴색하게 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세자의 조현을 통해 공양왕의 즉위를 공인했던 홍무제의 조치와도 상충되는 것이었다. 이것은 이성계 즉위 후 명의 인정을 놓고 논란이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처럼 창왕과 공양왕 세자의 親朝 추진은 공민왕 사후 급격한 정치변동 속에서 왕위 교체를 합리화하기 위해 국제관계를 활용한 성격이 높았던 것이다. 그런 만큼 조선 건국과정에 대한 구조적인 이해를 위해 검토가 필요한 주제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이와 관련해서는 여말선초 국제관계에 대한 탐구나, 조선의 창업과정, 특히 태종의 개국에서의 역할을 다루는 과정에서 간단하게 언급된 정도였다.<sup>5)</sup> 하지만 이성계가 권력을 장악하는 계기가 되었던 우왕과 창왕, 공양왕의

5) 김경록, 2007 「공민왕대 국제정세와 대외관계의 전개양상」『역사와현실』 64; 朴天植, 1980 「高麗 祔王代의 政治權力의 性格과 그 推移」『全北史學』 4; 朴宰佑, 1996 「高麗 恭讓王代 官制改革과 權力構造」『震檀學報』 81; 金塘澤, 1997 「高麗 祔王 元年(1375) 元과의 외교 관계 再開를 둘러싼 정치세력 간의 갈등」『震檀學報』 83(2012 앞의 책 재수록); 김순자, 2001 「元·明 교체와 麗末鮮初의 華夷論」『한국중세사연구』 10(2007 『韓國 中世 韓中關係史』, 혜안 재수록); 이형우, 2011 「우왕의 정치에 대한 일고찰: 출생배경과 폐위, 죽음을 중심으로」『한국인물사연구』 16; 홍영의, 2004 「高麗末 昌王代 '改革派' 新興儒臣의 結集과 分岐過程」『한국중세사연구』 16; 한충희, 2001 「朝鮮 太宗王權의 政治的基盤 研究」『大丘史學』 63; 윤두수, 1990 「禔昌非王說의 研究」『考古歷史學志』 5·6; 김당택, 1998 「高麗 昌王 元年(1389)의 金旤事件」『全南史學』 12(2012 앞의 책 재수록).

폐위과정에 대한 검토는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는 이성계 등 조선 개국세력의 정치적 입장과 사상을 일관된 것으로 규정하는 연구의 시각과도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 실상 공양왕의 즉위를 합리화한 고려 왕조 中興論과 공양왕 폐위 및 이성계의 즉위를 뒷받침한 易姓革命論은 논리적으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었다. 이러한 모순된 과정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명과의 외교를 정치적인 명분으로 활용하고 있었던 것이다.

본고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고려 말에 있었던 공양왕 세자의 조현이 가지는 의미를 그에 앞서 창왕의 조현을 추진했던 사정과 연계하여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2장에서는 창왕의 즉위와 입조 추진과정을 흥무제의 거부 논리와 관련하여 살펴볼 것이다. 그리고 3장에서는 공양왕 세자의 조현이 가지는 의미를 창왕 친조 실패의 맥락에서 살펴볼 것이다.

## 2. 昌王의 親朝 요청의 경위와 의미

### 1) 1차 親朝(監國 승인) 요청

창왕은 위화도회군 후 9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sup>6)</sup> 백관들이 傳國寶를 받들어 定妃殿에 두고<sup>7)</sup> 그의 명령에 따라 창왕을 옹립하였다. 당시 정비가 내린 教書에서 태조 아래의 위업과 공민왕의 업적을 논한 뒤

皇明을 만나니 환히 天命을 알아 諸國 보다 먼저 表를 받들어 稱臣하였고, 天子가 아름답게 여겨 王爵을 봉하고 金章을 내려주어 宗社와 백성이 길이 힘입게 하였다. 불행히 先王이 薦逝하여 卿의 아버지가 왕위를 이어 大國을 섭기고 백성을 위무하여 허물될 것이 없었는데, 뜻하지 않게 崔瑩의 유혹에 빠지니 鷹犬을 바쳐 사냥으로 인도하고 형벌을 가르쳐 위세와 학정을 멋대로 하였고, 결국에는 군대를 일으키고 대중을 움직여 中國에 혼란을 만드니 거의 종사·백성의 화가 되어 마음이 아프다고 말할 만하다. 다행히 祖宗의 陰佑에 힘입어 죄영을 쫓아내고 왕도 과오를 깨우쳐 스

6) 『高麗史節要』 권33, 辛禡4 禇王 14년 6월 9일(辛亥).

7) 『高麗史』 권137, 列傳50 禇王 14년 6월 8일(庚戌).

스로 그 지위를 내려놓았다. 종사의 제사와 백성의 생명이 경에게 달려 있으니 그 책임이 막중하다.<sup>8)</sup>

라고 하여 최영 등이 주도하여 중국을 침범한 잘못으로 인해 우왕이 스스로 물러난 것으로 제시하였다. 중국과 혼단을 만들었다는 것은 곧 요동 정벌을 가리키는 것으로, 이것이 우왕에서 창왕으로 국왕이 교체된 주된 명분이었던 것이다.<sup>9)</sup>

이에 상응하여 집권세력은 창왕의 즉위 직후 대명관계를 비롯한 국제관계의 안정을 통해 체제의 수습을 도모하게 되었다. 우선 門下評理 徐鈞衡 등을 明에 보내 胡人를 평정하여 寶璽를 획득한 것을 하례하였다.<sup>10)</sup> 즉위 직후 琉球에서 사신이 온 데 대해서도 우대하도록 하였고,<sup>11)</sup> 金允厚·金仁用을 보내 유구 왕에게 “高麗權署國事王昌”의 이름으로 答書하였다.<sup>12)</sup> 이는 창왕이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權署國事’로 직위를 나타낼 수밖에 없었던 사정을 보여준다.

창왕의 즉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명의 인정이 필수적이었다. 이에 禹仁烈과 契長壽를 보내 창왕의 襲封을 요청하고 최영이 군사를 일으켜 요동을 공격한 죄를 上奏하였다.<sup>13)</sup> 그런데 이 表文은 우왕의 명의로 작성되었다.

8)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即位년 6월 9일(辛亥) “及遇皇明 灼知天命 率先諸國 奉表稱臣 天子嘉之 封以王爵 賜以金章 以爲宗社生民之永賴 不幸先王薨逝 卿父嗣位 事大撫下 罔有所愆 不圖爲崔瑩所惑 進鷹犬以導田獵 教刑戮以逞威虐 乃至興師動衆 構釁中國 幾爲宗社生民之禍 言之可爲痛心 幸賴祖宗陰隲之佑 崔瑩黜退 王亦悔過 自遜其位 以宗社之祀生民之命 付之於卿 厥責重矣”

9) 창왕의 즉위에 대해 회군세력이 우왕의 ‘선위’형식을 취했다고 평가하고, 회군과정에서 국왕과의 대립이 여실히 드러난 상황에서 스스로 ‘逆臣’이 되는 상황을 벗어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한 연구도 있다(이명미, 2015 「고려 말 정치·권력구조의 한 측면: 위화도 회군 이후 창왕대 정국에서의 황제권 작용 양상을 중심으로」 『동국사학』 58, 88-89면).

10)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即位년 9월 “遣門下評理徐鈞 衡密直副使俞光祐 如京師 賀平定胡人 獲寶璽”

11)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8월 “初 全羅道都觀察使報 琉球國王 聞我國伐對馬島 遣使到順天府 都堂 以前代所不來 難其接待 昌曰 遠人來貢 待之薄 則無乃不可乎 使之入京慰送 可也”

12)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8월.

13)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即位년 7월 “遣門下贊成事禹仁烈政堂文學契長壽 如京師 告

하물며 臣은 평소 병약하고 國事도 번잡하여 마음이 閑居하며 요양할 것을 원했습니다. 삼가 臣의 高祖 忠烈王 眖와 曾祖 忠宣王 謙, 祖 忠肅王 燾의 3대가 아들에게 왕위를 물려준 故事에 의거하여 洪武 21년 6월 8일에 신의 아들 昌으로 하여금 임시로 국사를 담당하게 하였습니다.<sup>14)</sup>

위에서 우왕은 자신의 脊位가 前代의 고사에 따라 이루어진 것임을 표방하였다. 다만 창왕은 책봉을 받기 전이므로 국사를 權行한다고 표현하였는데, 이에 정식으로 襲封을 요청하였다. 우왕은 앞서 동왕 11년에 명으로부터 책봉을 받은 바 있다.<sup>15)</sup>

이 표문의 주체가 우왕이라는 점은 주목을 요한다. 우왕은 창왕 즉위 다음 해 金併 사건으로 강릉으로 移配되어 죽임을 당할 때까지 부왕으로서 위상이 유지되었다. 그는 폐위 후 江華로 쫓겨났지만<sup>16)</sup> 조정에서는 우왕의 생일에 의복을 바쳤고,<sup>17)</sup> 8월에는 추석이라 하여 都堂에서 의복과 酒果를 보내기도 하였다.<sup>18)</sup>

9월에 驪興郡으로 옮겨진 후에도<sup>19)</sup> 그곳의 郡兵이 宿衛하고 收稅하여 供奉하도록 하였고,<sup>20)</sup> 다시 우왕의 생일을 맞아 죄수를 방면하는<sup>21)</sup> 등 예우가 지속되었다. 여흥군도 우왕을 안치한 후 黃驪府로 승격하였다.<sup>22)</sup> 이것은 우왕이 脊位에도 불구하고 前王이자 현 국왕의 부왕으로서의 위상이 유지된 것을 보여준다. 앞서 충렬왕과 충선왕, 충숙왕과 忠惠王의 경우처럼 脊位한 후에도 다시 국왕으

“禡遜位 請昌襲封 兼奏崔瑩興師攻遼之罪”

14)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即位년 7월 “況臣素豐疾病 國事且繁 情願閑居頤養 謹依臣高祖忠烈王眘 曾祖忠宣王謙 祖忠肅王燾三代 退位於子故事 於洪武二十一年六月初八日 令臣男昌 權行勾當”

15) 『明太祖實錄』 권174, 明태조 18년 7월 14일(甲戌) “封王禡 爲高麗國王”

16)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禡 14년 6월 8일(庚戌).

17)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即位년 7월 7일(己卯) “都堂以禡生日 遣三司左使趙仁璧同知密直具成老于江華 獻衣襪”

18)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即位년 8월 “都堂以秋夕 遣知密直李彬等 獻禡衣襪酒果”

19)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即位년 9월 “禡自江華 遷驪興郡 以其郡兵宿衛 收稅供奉 遣三司左使趙仁璧 賛成事池湧奇 同知密直禹洪壽 密直副使柳濬等 享禡于通津”

20)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7월 7일(癸酉) “都堂獻禡衣服鞍馬 紿侍女內豎宦者冬衣”

21)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7월 7일(癸酉) “以禡生日 放輕繫”

22) 『高麗史』 권56, 地理1, 黃驪縣 “至大明洪武二十一年 遷僕主辛禡于郡 陞爲黃驪府”

로 복귀한 重祚가 실행된 사례도 있었기 때문에 왕위로부터 퇴위하였다고 정치적 위상이 말살되지는 않았다.<sup>23)</sup>

또한 창왕의 즉위 직후 曹敏修와 李成桂는 ‘忠勤亮節宣威同德安社功臣’의 칭호를 받았다.<sup>24)</sup> ‘安社’는 창왕의 즉위가 사직을 안정시킨 공헌이라는 의미를 띠고 있음을 반영한다. 이러한 양상은 창왕의 즉위가 우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전제 아래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우왕의 요청에 대해 洪武帝는 의혹을 표방하였다.

고려국왕 王禡가 그의 신하 禹仁烈 등을 보내 上表하여 그의 아들 昌에게 遷位할 것을 청하였다. 上이 말하기를, “예전에 그 왕이 구금되었다고 들었는데, 지금 표를 올려 손위를 청하니 반드시 그의 신하 李成桂의 모의에 의한 것이다. 東夷는 狹詐가 많은 무리이니, 이를 일단 그대로 두고 그 변화를 보도록 하라.”라고 하였다.<sup>25)</sup>

위에서 홍무제가 우왕이 구금되었다는 사실을 전해 들어 알고 있었기 때문에 손위 요청을 이성계의 모의에 따른 것으로 판단한 것이다.

명은 우왕대에도 禿君을 문제 삼아 공민왕에게 시호를 주지 않고 통교를 거절하는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에 고려는 홍무 18년에야 비로소 습봉을 공인받고 공민왕의 시호를 받을 수 있었다.<sup>26)</sup> 이러한 전례에서 볼 때 창왕의 즉위와 관련하여 명이 우왕의 유폐를 인지한 사실은 큰 부담이었다. 특히 창왕의 즉위가 위화도회군이 계기가 되었던 만큼 명의 인정은 더욱 중요한 것이었다.

23) 이러한 상황은 조선 태조에게서도 드러난다. 1차 왕자의 난으로 定宗에게 왕위를 물려주었지만 정종과 태종과 그 후계자의 책봉에 깊이 관여하였다. 이에 대해서는 윤정, 2013 「定宗의 즉위 과정과 즉위 명분: 1차 왕자의 난과 神懿王后 추존」『震檀學報』 119; 2015 「定宗代 上王 太祖의 臨御와 開城 德壽宮」『서울학연구』 58 참조.

24) 『高麗史節要』 권33, 辛禡4 禡王 14년 6월 “賜曹敏修及我太祖 忠勤亮節宣威同德安社功臣之號”

25) 『明太祖實錄』 권194, 명태조 21년 10월 20일(庚申) “高麗國王王禡 遣其臣禹仁烈等 上表請遜位于其子昌 上曰前者聞其王被囚 今表請遜位 必其臣李成桂之謀 東夷狡詐多類 此姑俟之 以觀其變”

26) 『明太祖實錄』 권174, 명태조 18년 7월 3일(癸亥) “高麗權國事王禡 夏遣門下評理尹虎密直副使趙胖上表獻馬 請襲爵 幷請其故王王顥封謚從其請”; 권174, 명태조 18년 7월 14일(甲戌) “封王禡 爲高麗國王”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창왕의 습봉을 허락받기 위해서는 더 각별한 명분과 노력이 필요하였다. 이러한 배경에서 추진된 것이 바로 창왕의 入朝였다.

『고려사』 기록에는 창왕의 朝見 요청이 세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첫 번째는 창왕 즉위년 10월에 李檪이 賀正使로 가서 태조를 만났을 때 창왕의 친조를 요청한 것이다.<sup>27)</sup> 앞서 8월 이색은 門下侍中이 되었고,<sup>28)</sup> 李崇仁과 함께 京師로 파견되었다. 당시 이성계의 다섯째 아들인 李芳遠은 書狀官으로서 동행하였다.<sup>29)</sup>

이에 대해 『태조실록』의 총서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이색은 태조의 위엄과 덕망이 날로 성하여 조정과民間에서 마음이 그에게 돌아가 자신이 돌아오기 전에 변고가 있을까 두려워하여 태조의 아들 한 명이 따라가도록 청하니, 태조가 殿下를 書狀官으로 삼았다.<sup>30)</sup>

『태조실록』은 태조가 사망한 태종 8년 이후 편찬이 시작되어 동왕 13년 완성되었다.<sup>31)</sup> 이에 위의 기사에서 제시한 殿下는 이방원을 지칭하는 것이다. 태종이 서장관이 된 것은 이성계의 위망으로 인한 변고를 예방하기 위해 이색이 요청했기 때문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서술은 이성계가 즉위하여 조선 왕조를 개창한 상황을 전제로 해석한 것으로서 태종·세종대 실록 찬자의 역사인식을 반영한다. 당시 상황은 위화도회군 이후 이성계 세력이 대명외교에 관여한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여기서 이성계 등도 창왕의 즉위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우선 이색이 正朝使로 명에 간 것은 그가 창왕을 옹립한 핵심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27) 『高麗史』 권115, 列傳28 李檪.

28)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즉위년 8월 “以李檪 爲門下侍中 我太祖守侍中”

29) 태종은 이후 태조 3년에도 명에 파견되었다. 이와 같이 명에 두 번 입조한 것은 태종이 창업에 공헌한 대표적인 사례이다. 이에 태종의 신도비에도 그 사실을 적시하고 있다[『太宗實錄』 권36, 태종 18년 11월 8일(甲寅)].

30) 『太祖實錄』 권1, 總序 “檪以太祖威德日盛 中外歸心 恐其未還乃有變 請一子從行 太祖以殿下爲書狀官” 『高麗史節要』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31) 『太宗實錄』 권25, 태종 13년 3월 22일(辛丑).

百官이 傳國寶를 받들어 定妃殿에 두자 태조는 王氏의 후손을 택하여 세우고자 하였지만, 조민수는 李仁任이 발탁한 은혜를 생각하여 昌을 세우고자 하였는데, 諸將이 자기를 어길까 우려하여 이색이 당시의 名儒이므로 그의 말을 근거로 삼고자 몰래 물으니, 이색은 “당연히 前王의 아들을 세워야 한다.”라고 하였다.<sup>32)</sup>

위의 기사에 따르면 조민수가 창왕을 옹립하는 데 있어서 이색의 지지가 결정적으로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내용은 이성계가 왕씨를 세우려는 데 맞서 창왕을 세우려는 조민수가 이색의 명망을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는 창왕이 신돈의 후예라는 전제를 깔고 있다는 점에서 후대의 인식이 투영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 직전에 이색은 판문하부사가 되어<sup>33)</sup> 정계를 이끌고 있었음에 비추어 실제로는 이색의 주도 아래 정계 전반이 창왕 옹립에 동의한 것으로 보인다. 자연 이색은 어린 창왕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조치를 강구하게 되었다.<sup>34)</sup>

창왕의 승습을 인정받기 위해 명에 입조한 이색은 홍무제를 만났다. 당시 상황에 대해 『고려사절요』에는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侍中 李穡과 簽書密直司事 李崇仁을 보내 京師에서 正朝를 진하하며 王의 官爵과 監國을 요청하고, 또 子弟의 入學을 청하였다. 공민왕이 죽은 후 天子가 매번 執政大臣을 불러 入朝하게 하니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가지 못하였다. 이색이 재상이 되자 스스로 入朝를 청하였다.<sup>35)</sup>

위에서 이색이 자청하여 입조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창왕의 즉위를 인정받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파견 명분은 賀正使였고<sup>36)</sup> 명의 요구에 따른 것처

32) 『高麗史』 권137, 列傳50 辛禡5 禥王 14년 6월 8일(庚戌) “百官奉傳國寶 置定妃殿 太祖欲擇立王氏後 曹敏修 念李仁任薦拔之恩 欲立昌 恐諸將違己 以李穡爲時名儒 欲籍其言 密問之 穡曰 當立前王之子”

33)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7월.

34) 당시 이색의 우왕과 창왕의 폐출에 대해 한 입장에 대해서는 李佑成, 1996 「목은(牧隱)에게 있어서 우창문제(禡昌問題) 및 전제문제(田制問題): 고려왕조(高麗王朝)의 존속(存續)을 위하여」 『牧隱 李穡의生涯와思想』, 일조각 참조.

35) 『高麗史節要』 권33, 辛禡4 禥王 14년 10월 “遣侍中李穡 簽書密直司事李崇仁 如京師 賀正請王官監國 又請子弟入學 自玄陵之薨 天子每徵執政大臣入朝 皆畏懼 不敢行 及穡爲相 自請入朝”

럼 적고 있지만, 이색이 창왕의 監國을 요청한 것에서 실질적인 목적이 창왕의 승습을 인정받는 데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앞서 우왕의 손위 요청에 대해 의혹을 드러냈던 홍무제는 감국 요청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를 삼지 않았다. 12월에 홍무제는 前元院使 喜山와 大卿 金麗·普化 등을 보내 말과 騏人을 구하였다. 특히 喜山 등이 고려인이었기 때문에 황제에 대한 의례를 마치자 마당으로 내려가 창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四拜를 행하고 창왕은 서서 이를 받았다.<sup>37)</sup> 이것은 명시적이지는 않더라도 명에서 창왕을 국왕으로 인정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홍무제는 고려에 가는 사신에 대해

북방에서 귀순한 達達(몽골)의 親王 등 80여 호를 모두 殷羅로 보내 거주시키려고 한다. 너희들이 고려에 가거든 잘 설득하여 그곳으로 사람을 보내 깨끗하고 편리하여 갈 만한 곳에 살 곳을 만들고 함께 돌아와 보고하도록 하라.<sup>38)</sup>

라고 지시하였다. 이에 고려 정부는 집 85개를 물색하여 수리하였다. 이것은 창왕의 즉위를 확인하는 대신 과거 원이 지배하였던 탐라를 활용하는 것을 대가로 요구했음을 짐작하게 한다.<sup>39)</sup>

그런데 이색 열전에는 당시 사행에서 창왕의 입조를 요청한 것으로 나와 의문을 자아낸다.

황제가 평소 이색의 명성을 듣고 여러 차례 불러 만났는데 예우가 아주 두터웠다. 조용히 말하기를, “네가 元朝에서 翰林이 되었으니 응당 漢語를 알겠구나”라고 하자, 이색이 이에 漢語로 갑자기 대답하기를, “親朝를 요청합니다”라고 하니 天子가 알아듣지 못하여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자 禮部의 관리가 전달하여 아뢰었다. 이색

36) 『명태조실록』에는 이색이 正旦을 축하하러 온 것으로 되어 있다. 『明太祖實錄』 권194, 명태조 21년 12월 20일(壬子) “高麗 遣其臣李穡等 上表賀 明年正旦”

37)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즉위년 12월.

38)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즉위년 12월 “征北歸順來的達達親王等八十餘戶 都要教他耽羅住去 懲去高麗 說知教差人那里淨便去處 打落了房兒一同 來回報”

39) 이에 대해서는 배숙희, 2012 「元末·明初의 雲南과 故元 後裔의 濟州 移住」 『東洋史學研究』 119 참조.

이 오래 入朝하지 못하여 말이 자못 매끄럽지 못했는데, 황제가 웃으며 “너의 漢語가 바로 納哈出와 비슷하다”라고 하였다.<sup>40)</sup>

위의 기사에는 이색이 흥무제를 만난 자리에서 친조를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것은 물론 창왕의 입조를 지칭한 것인데, 내용이 전후 맥락 없이 갑자기 말한 것으로 되어 있어 그 사실성에 의문이 든다.

실상 2개월 전에 禹仁烈 등을 보내 우왕의 손위를 청한 것에 대해 흥무제가 의혹을 표명한 상황으로 감안할 때, 이색이 창왕의 친조를 요청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나 결과가 드러났을 것이다. 또한 후술하듯이 이색 일행이 떠난 지 한 달 뒤에 실제 친조를 요청하는 사신이 파견되었다. 동일한 목적을 떠는 사신을 연이어 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필요할 뿐 아니라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보면 당시 사행은 창왕의 감국을 요청한 것일 뿐, 친조와 관련된 요청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이색이 황제를 만난 자리에서 전격적으로 요청한 것일 수도 있지만, 친조는 독단적으로 요청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감국 요청을 親朝로 바꾸어 적은 것이거나 아예 이색이 친조를 요청한 것으로 가공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내용은 『龍飛御天歌』에도 보여 이로부터 생성된 내용이 아닐까 한다.

고려의 공민왕이 사망하고부터 천자가 매번 執政大臣을 불렀으나 모두 두려워하여 감히 가지 못했다. 辛昌이 즉위하자 門下侍中 李穡이 昌을 親朝시키고 또한 왕의 官爵과 監國을 원하여 입조를 自請하였다. (중략) 천자가 평소 이색의 명성을 듣고 조용히 말하기를 “네가 원나라에서 벼슬을 하여 翰林이 되었으니 응당 漢語를 알겠구나”라고 하자 이색이 이에 漢語로 대답하여 “親朝하겠습니다”라 하니 천자가 알아듣지 못하여 “뭐라고 말하는가?”라고 하자 禮部의 관리가 전달하여 아뢰었다. 이색이 오래 入朝하지 못하여 말이 자못 매끄럽지 못했는데, 천자가 웃으며 “너의 漢語가 바로 納哈出와 비슷하다”라고 하였다.<sup>41)</sup>

40) 『高麗史』 권115, 列傳28 李穡 “帝素聞穡名 引見數四 禮待甚厚 從容賜語曰 汝在元朝 爲翰林 應解漢語 穡乃以漢語遽對曰 請親朝 帝未曉曰 說甚麼 禮部官傳奏之 穡久不入朝 語頗艱澁 帝笑曰 汝之漢語 正似納哈出”

41) 『龍飛御天歌』 70장 “高麗自恭愍王薨 天子每徵執政大臣 皆懼不敢行 辛昌立 門下侍中李穡

주지하듯이 『용비어천가』는 세종 25년 訓民正音 창제 이후<sup>42)</sup> 동왕 27년 친술된 것으로 세종대의 역사인식이 강하게 투영되어 있다.<sup>43)</sup>

위의 글에서 후반부는 황제와 천자의 칭호를 제외하고는 『고려사』의 기록과 같다. 그런데 전반부 이색 사신 파견 기사에는 감국 요청에 앞서 昌王의 親朝를 도모한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이것은 『고려사』 기록에는 없는 부분이다. 이것은 1차 친조 요청이 실재하지 않으며, 조선 개국 세력의 시작에서 생성된 것임을 보여준다.

그런데 위의 내용은 『태조실록』 총서에도 보인다. 둘을 대조해 보면 『태조실록』에는 『용비어천가』의 “辛昌立”만이 빠지고, 이색이 흥무제에게 ‘請親朝’라 하였다고 하여 ‘請’을 넣은 『고려사』의 해당부분과 같다. 이러한 미세한 차이를 제외하면 『태조실록』과 『용비어천가』의 해당부분은 완전히 동일한 내용이다.<sup>44)</sup> 이것은 『태조실록』의 기록 역시 『용비어천가』의 편찬에 따라 개정된 상황을 보여준다. 세종 30년 『태조실록』이 증보되었음이 확인되어<sup>45)</sup>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 한다.

그렇다면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 낸 것일까. 이것은 뒤에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한 것과 관련된다. 이색의 입조로 창왕의 감국은 사실상 승인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운 것은 다시 황제가 인정한 왕을 쫓아낸 폐역으로 규정될 수 있다. 우왕의 폐위에 대해 요동 정벌이라는 反明 행위를 명분으로 제시한 것처럼 창왕의 폐위에도 명분이 필요하였다.

---

欲昌親朝 又欲王官監國 自請入朝 (중략) 天子素聞稽名 從容語曰 汝仕元爲翰林 應解漢語  
稽遽以漢語對曰 親朝 天子未曉曰 說甚麼 禮部官傳奏之 稽久不入朝 語頗艱澁 天子笑曰  
汝之漢語 正似納哈出”

42) 『世宗實錄』 권102, 세종 25년 12월 30일(庚戌).

43) 『世宗實錄』 권108, 세종 27년 4월 5일(戊申).

44) 『太祖實錄』 권1, 總序 “自恭愍王薨 天子每徵執政大臣 皆懼不敢行 門下侍中 李穡欲昌親朝  
又欲王官監國 自請入朝 (중략) 天子素聞稽名 從容語曰 汝仕元爲翰林 應解漢語 稽遽以漢  
語對曰 請親朝 天子未曉曰 說甚麼 禮部官傳奏之 稽久不入朝 語頗艱澁 天子笑曰 汝之漢  
語 正似納哈出”

45) 『太宗實錄』 권15, 세종 30년 6월 증보편수관명단.

이것이 주지하듯이 우왕과 창왕이 辛旼의 후예라는 ‘辛禡辛昌’論(‘禡昌非王’說)으로 제시되었다.<sup>46)</sup> 그리고 이성계 세력은 후술하듯이 명에서 창왕의 친조를 거부한 것이 바로 창왕의 혈통 때문이라는 해석을 내렸다. 이러한 맥락에서 처음 이색의 감국 요청과 승인에 대해 친조 요청과 거부라는 내용을 부가함으로써 감국에 대한 명의 인정이라는 요소를 무력화하고자 한 것으로 보인다. 곧 친조 문제를 매개로 홍무제가 처음부터 창왕을 부정했다는 맥락으로 이색의 사행내용을 새로이 구성한 것이다.

## 2) 2차 親朝 요청

이색 등이 명으로 떠난 지 한 달 후인 11월 창왕의 친조를 요청하는 사신이 별도로 파견되었다. 이번 사행은 密直使 姜淮伯과 이성계의 장자인 李芳雨가 파견되었다.<sup>47)</sup> 창왕의 입조를 위한 사신이 따로 파견된 것을 보면, 앞서 이색 등은 賀正使로 간 것이며, 1차 친조 요청은 실재하지 않았음을 짐작할 수 있다.

### 강희백 등이 가져간 表文에서 창왕은

禮는 천자를 직접 알현하는 것[朝覲]보다 중요한 것이 없으니, 마음으로 호소하는 것이 절실합니다. 先臣인 공민왕 때 마침 중국에서 새 황제가 일어남을 맞이하여 표문을 바쳐 內附하고, 東藩의 신하를 칭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나라가 멀리 떨어져 있어 변고가 많았던 까닭으로, 비록 歲時의 進貢은 부지런히 하면서도 천자를 직접 뵙지는 못하였습니다. 미친한 신은 부왕의 명을 이어 저희 나라를 임시로 다스리고 있으니, 마땅히 황제의 조정에서 제 직임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엎드려 바라건대, 폐하께서 넓은 도량과 관용으로 한결같이 仁으로 대하여 별 볼일 없는 저희들이 폐하의 빛나는 얼굴을 뵙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신이 삼가 萬國의 會同에 참여하여 한 분의 부귀와 장수를 축원하고자 합니다.<sup>48)</sup>

46) 이 說의 허구성에 대해서는 신호옹, 2003 「恭愍王代 辛旼의 개혁정치와 禡王非王說」『梨花史學研究』 30 참조.

47)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즉위년 11월 “遣密直使姜淮伯 副使李芳雨 如京師 請朝見”

48)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즉위년 11월 “禮莫重於朝覲 心用切於籲呼 惟先臣恭愍之時 值中國聖神之作 奉表內附 稱臣東藩 第在遐陬 仍遭多故 雖勤歲時之進貢 尚阻天日之親瞻 以臣之微 承父之命 紘權署於小邑 當述職於帝庭 伏望 陛下度擴兼容 仁推一視 遂令辱質 獲覩耿光 臣謹當參萬國之會同 祝一人之富壽”

라고 친조를 요청하였다. 이것은 공민왕이 처음으로 명에 외교관계를 맺은 전통을 계승하는 것인 동시에 우왕의 뒤를 이어 임시로 감국하는 창왕의 입지를 정식으로 인정해 줄 것을 요청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창왕의 친조를 통해 위화도회군에 따른 왕위교체를 공민왕 초기 친명정책을 계승한 것으로 명분화하여 합리화하고자 했던 것이다.

이 때 특히 주목되는 것은 사신 일행에 이성계의 장남인 이방우가 副使로 참여한 점이다. 그가 친조 요청에 참여한 것은 앞서 이색의 감국 요청에 이방원이 서장관으로 따라간 것과도 연결된다. 이로 보아 이색 열전에는 이성계 세력을 견제하기 위한 것처럼 적고 있지만, 이는 후에 공양왕 즉위를 둘러싸고 이성계와 대척점에 서게 된 이색과의 차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표현으로 판단된다. 실제로는 이색 등과 함께 창왕의 즉위를 위한 대명외교에 이성계 세력이 주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이해된다.<sup>49)</sup>

이처럼 창왕 즉위 후 집권세력이 대명 외교에 역점을 둔 것은 당초 위화도회군의 정당화를 위해 요동정벌의 부당성을 공인받으려는 측면도 있었다. 이것은 崔瑩의 죄를 적극 부각시키는 조치를 통해 감지된다.

최영은 회군 세력을 방어하는 데 실패한 후 合浦로 유배되었다가,<sup>50)</sup> 7월 忠州로 옮겨졌다.<sup>51)</sup> 이어 11월 대간은

최영이 비록 공이 있으나 요동을 공격하려 결의하여 上國에 죄를 얻었으니 공이 죄를 가릴 수 없습니다. 청컨대 그를 베어 上國의 노여움을 푸십시오.<sup>52)</sup>

라고 하여 처벌을 청하였고, 다음 달에 최영을 참수하였다.<sup>53)</sup> 이것은 위의 기사

49) 이성계 아들들이 개국과정에 참여한 상황이 후계구도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는 윤정, 2009 「太祖代 貞陵 건설의 정치사적 의미」 『서울학연구』 37; 2013 「定宗의 즉위 과정과 즉위 명분: 1차 왕자의 난과 神懿王后 추존」 『震檀學報』 119 참조.

50) 『高麗史節要』 권33, 辛禡4 禱王 14년 6월 5일(丁未) “諸將入城 會議地藏寺 移配崔瑩于合浦”

51) 『高麗史節要』 권33, 辛禡4 禱王 14년 7월 “流崔瑩于忠州 斬鄭承可 杖流趙珪于角山 趙琳于豐州 又斬安沼宋光美印元寶于流所”

52) 『高麗史節要』 권33, 辛禡4 禱王 14년 11월 “典法臺諫上書 以爲瑩雖有功 決意攻遼 獲罪上國 功不掩罪 請誅之 以解上國之怒”

에 보는 바와 같이 “요동을 공격하여 上國에 죄를 얻었다”는 것이 중요한 명분이 되었다. 그리고 그를 처벌하여 상국의 노여움을 푼다는 것은 결국 최영을 처벌할 명분으로 대명관계를 활용하고자 하는 의도를 시사한다. 명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의 수립을 기정사실화하고 최영 등의 요동 공격이 이를 거부한 것으로 공격함으로써 위화도회군이 가지는 반역으로서의 성격을 회석시키고자 한 것이다.<sup>54)</sup>

이런 구도에서 창왕의 조현이 실현된다면 명이 창왕의 왕위 정통성을 보증하는 것이 되고, 요동 정벌의 모든 책임을 최영에게 전가함으로써 창왕의 즉위를 가져온 위화도회군도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다음 해 2월 尹師德를 京師로 보내 崔瑩의 목을 벤 것을 보고한 것은 그 속성을 잘 보여준다.<sup>55)</sup>

이러한 일련의 조치를 통해 당시 집권세력은 창왕의 조현이 가능할 것으로 보았다. 그런데 3월에 姜淮伯 등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돌아왔다. 예부가 황제의 명에 따라 회보한 啓文에는

고려는 산과 바다로 막혀 있어 風俗이 다르니 비록 中國과 서로 통한다고 하지만  
離合이 일정하지 않다. 지금 臣子가 그 아버지를 烹아내고 그 아들을 세워 來朝하고  
자 요청하고 있다. 대개 舜倫이 크게 허물어지고 君道가 없어졌으니 신하가 신하 노  
릇을 하지 않는 반역이 크게 나타났다. 使者가 돌아가거든 童子가 반드시 來朝할 필요가 없다. 세움도 저들에게 있고 폐함도 저들에게 있으니 中國은 더불어 간여하지  
않는다고 유시하라.<sup>56)</sup>

라고 하여 창왕의 입조를 허가하지 않았다. 회군 세력이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세운 것을 반역으로 간주한 것이다. 다만 고려의 일에 중국이 간여하지 않겠다

53) 『高麗史節要』 권33, 辛禡4 禡王 14년 12월.

54) 최영이 추진한 요동정벌에 대해서는 柳昌圭, 1994 「高麗末 崔瑩 势力의 형성과 遼東攻略」 『歷史學報』 143; 金永壽, 1999 「위화도 회군의 정치: 최영·이성계의 요동공벌 정쟁과 이색·이성계의 정치개혁·정통성 논쟁」 『韓國政治學會報』 33-1 참조.

55)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2월 “遣同知密直司事尹師德 如京師 奏誅崔瑩”

56)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3월 18일(丁亥) “高麗限山負海 風殊俗異 雖與中國相通  
離合不常 今臣子逐其父 立其子 請欲來朝 盖爲舜倫大壞 君道專無 不臣之逆大彰 諭使者歸  
童子不必來朝 立亦在彼 墓亦在彼 中國不與相干”

는 입장을 밝혔다. 창왕의 즉위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기는 하지만 그 즉위 명분은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였다.

앞서 보았듯이 홍무제는 우왕의 유폐가 이성계의 계책에 따른 것이라는 의심을 가지고 있었고, 이에 관망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바 있다. 창왕 조현을 거부한 것은 그 연장에 있다. 따라서 창왕 조현을 요청하고 죄영 처벌을 알리면서 회군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한 집권세력의 의도는 실패하였다.<sup>57)</sup>

당시 상황과 관련하여 『명태조실록』에서는 權署國事 王昌의 입조 요청에 대해 홍무제가 다음과 같이 말한 것으로 정리하고 있다.

고려가 姜淮伯을 사신으로 보내 그 權署國事 王昌이 入朝를 청한다고 상주하였다. 上이 그 사신에게 유시하여 이르기를, “高麗는 산과 바다로 막혀 있어 풍속이 다르니 역대 아래로 비록 中國과 통교하며 조공했지만, 向背가 일정하지 않고 말을 믿지 못할 경우가 많다. 근래에 신하가 권력을 잡아 矢立을 마음대로 하니 이미 그 아버지를 가두고 그 아들을 세웠다. 지금 입조를 청하는데 이것이 어찌 그 왕의 뜻이겠는가. 菲시 권력을 잡은 자의 행위일 것이니 거짓말하는 정세를 환히 볼 수 있다. 옛날 賢哲한 군주는 이런 잘못된 일에 대해 이유를 듣고자 하지 않았다. 대저 鞠倫을 무너뜨리고 君道를 폐한 것은 人臣의 예의가 아니며 大逆不道한 것이니 중국에는 없는 일이다. 너희 사신들은 고려에 돌아가서 말하라. 이미 自立했으니 童子가 來朝할 필요가 없다. 너희 나라 안의 賢者가 是非를 스스로 알 것이니 중국이 간여할 바가 없다”라고 하였다. 또 禮部에 명하여 이 뜻으로 그 나라에 問文을 보내 알도록 하였다. 또 遼東都指揮使司에 칙서를 내리기를, “만약 고려왕이 요동에 이르거든 영접하고 그 나라로 돌려보내도록 하라. 만약 사자가 온다면 막지 말라”라고 하였다.<sup>58)</sup>

위의 기사는 『고려사』에 인용된 問文에는 보이지 않는 내용이 여럿 보인다.

57) 위화도 회군 이후 집권세력의 구성과 이들의 분화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58) 『明太祖實錄』 권195, 명태조 22년 1월 20일(辛未) “高麗遣使姜淮伯 來奏其權署國事王昌 請入朝 上諭其使曰高麗限隔山海 風殊俗異 歷代以來 雖通貢中國 而向背不常 言多不信 遷年以來 臣執國柄 矢立自由 既囚其父而立其子 今請入朝 此豈其王之意 必執國柄者之所爲也 詭詐之情 昭然可見 自昔賢哲之君 若此非爲耳 不欲聞何也 盖爲壞鞠倫廢君道 無人臣禮 大逆不道 非中國之所有 爾使者 歸語爾高麗 既自立 童子不必來朝 爾國中之賢者 自知是非 中國無所與焉 且命禮部 仍以此意 問其國 使知之 又敕遼東都指揮使司 曰 如高麗王至遼東 宜燕待之 命還其國 若使者來 勿阻”

“신하가 권력을 잡아 矢立을 마음대로 했다”고 한 것은 우왕의 손위 요청에 대한 반응과 동일하다. 이에 근거하여 이번의 入朝 요청도 왕의 뜻이 아니라 권신이 도모하는 것임을 지적하였다. 이는 창왕 친조를 통해 집권세력이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를 명에서 명확히 알고 있었던 것을 보여준다. 흥무제는 요동의 관리에게 친조 일행이 오더라도 돌려보내도록 조치함으로써 이러한 입장은 확고히 하였다.

창왕의 입조를 거부당한 것은 결과적으로 이를 추진한 집권세력의 정치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었다. 창왕 1년 4월 앞서 떠났던 이색 등이 돌아왔다.<sup>59)</sup> 먼저 떠났던 이색 일행이 늦게 귀국한 것은 南京에서 해로를 통해 귀국하느라 길이 달랐고, 당시 客船이 침몰하는 사고가 있었기 때문이었다.<sup>60)</sup>

그런데 이들이 가져온 詔書에는

나에게 몇 명의 아이가 있으니, 고려에도 근본이 좋은 집안의 여아가 있으면 장차 혼인을 하도록 하라.<sup>61)</sup>

라는 내용이 들어 있었고, 입조 요청에 대한 답은 없었다. 이것으로도 이색이 창왕의 입조를 요청한 사실은 없었다는 것을 판단할 수 있다. 이색의 과정은 창왕의 감국을 요청한 것이었고, 명은 고려의 일에 간섭하지 않는다는 명분 아래 창왕의 즉위를 묵인하는 수준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같은 근거에서 친조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다만 자신의 아들과 고려 명문가의 딸과 혼인을 추진한 점이 주목된다. 이는 국왕의 立廢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대한 영향력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 아닌가 한다. 원의 쇠퇴와 함께 중원을 장악한 명으로서는 고려가 원의 부마국이 된 것과 같은 원리에서 혼인 관계를 통해

59)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4월 “李穡等 還自京師 宣諭聖旨 我這裏有幾箇孩兒 恳高麗有根脚好人家女孩兒 與將來教做親”

60) 『高麗史節要』 권34, 昌王 1년 4월.

61)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4월 “我這裏有幾箇孩兒 恳高麗有根脚好人家女孩兒 與將來教做親”

고려에 대한 영향력을 증대시키고자 한 것이다. 따라서 고려의 상황 변화에 따라 명이 고려에 대한 불개입 입장을 바꿀 여지는 상존하고 있었다. 이것은 이성계 세력이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면서 현실화되어 나타나게 되었다.

### 3. 恭讓王 즉위와 세자 朝見

#### 1) 昌王의 3차 親朝 요청과 공양왕의 즉위

고려는 강회백 등을 보내 전달한 조현 요청이 실패한 후 다시 조현을 시도하였다. 이것은 창왕 원년 6월에 있었다.

門下評理 尹承順과 簽書密直司事 權近을 보내 京師에 가서 親朝를 청하고 또 處女의 일을 稟議하였다.<sup>62)</sup>

위에서 處女의 일은 앞서 홍무제가 자신의 아들과 고려의 명문가 딸을 결혼시킬 뜻을 전한 데 대한 것으로 파악된다. 고려는 이에 대한 의견을 전하면서 창왕의 조현을 다시 요청하였다. 기록상 이것이 세 번째 조현 요청인데, 전술한 것처럼 첫 번째는 실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므로 이번이 실제로는 두 번째가 된다.

한편 윤승순 등은 9월 돌아와 예부에서 황제의 명에 따라 都評議使司에 移咨한 문서를 전하였다.

洪武 22년 8월 8일, 本部尙書 李原明 등의 관원이 奉天門에서 聖旨를 欽奉하니, “고려는 나라 안에 일이 많아 陪臣이 된 자로서 忠逆이 혼잡하니 행한 바가 모두 좋은 모의가 아니다. 임금의 자리는 王氏가 시해되면서 후사가 끊어졌고, 비록 王氏를 가탁하여 異姓으로 하게 되었으니 역시 三韓이 대대로 지켜온 良法이 아니다. 예로부터 禿君한 賊徒가 있었지만 임금의 악행이 심한 데 말미암은 것이다. 대개 禿君한 자는 비록 亂臣賊子라 하더라도 또한 정사를 평고 仁을 베풀어 天意를 돌리고 백성을 편하게 만든 적도 있다. 지금 고려의 陪臣이 몰래 모의하여 거짓을 저질러 지금

62)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6월 “遣門下評理尹承順簽書密直司事權近 如京師 請親朝 且稟處女事”

까지 안정되지 않으니 설사 반역으로 얻고 반역으로 지킨다고 가능하겠는가. 만약 반역을 일상으로 여기면 逆臣이 줄을 이어 일삼을 것이니, 모두 처음 반역한 자가 가르친 것이므로 또한 누구를 원망할 것인가. 禮部에서 移文하여 지난번에 童子를 경사로 오지 못하도록 하였으니 과연 현명하고 지혜로운 배신이 자리에 있어 위에서 君臣의 분수를 정하여 나라에 백성의 뜻에 부합되는 계책을 만든다면 비록 수십 년 동안 조현하지 않는다고 무슨 근심이 있겠으며, 해마다 來朝하여도 무엇을 싫어하겠는가. 또한 處女를 보내지 말라고 명하라”라고 하였습니다.<sup>63)</sup>

라고 하여 친조를 다시 거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마지막 기사에서 앞서 자신의 아들들과 고려의 명문가의 딸과 혼인시키기 위하여 처녀를 보내라는 명령까지 철회하였다.

주목되는 것은 입조 거부의 명분이다. 왕씨가 폐살되고 異姓이 왕씨를 가탁하였기 때문에 입조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앞서 입조를 거부한 논리는 신하들이 국왕을 임의로 교체했다는 데 있었다. 위에서도 여전히 반역에 대한 언급을 하고 있지만, 전과 달리 우왕 유폐와 관련된 언급은 없고 대신 공민왕의 시해와 이에 따른 異姓의 즉위를 갑자기 문제로 제기하였다. 결국 반역의 핵심이 신하에 의한 국왕의 교체보다 異姓의 즉위에 초점이 있는 것이다. 이것은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후예라는 인식과 연결된다.

우왕이 신돈의 아들로서 즉위 자체가 잘못된 것이라고 보면 우왕 폐위는 문제 가 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인식이 일반화되었다면 창왕을 옹립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창왕 당시의 상황을 반영한다고 보기 어렵다. 곧 창왕까지 폐위된 뒤에 그를 명분으로 형성된 ‘辛禡辛昌’論이 투영된 것이다.

실제 明의 사료에는 이러한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우선 『명사』에는

63)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9월 “洪武二十二年八月初八日 本部尙書李原明等官 於奉天門 欽奉聖旨 高麗國中多事 爲陪臣者 忠逆混淆 所爲皆非良謀 君位 自王氏被弑絕嗣 後雖假王氏 以異姓爲之 亦非三韓世守之良法 古有弑君之賊 由君惡貫盈 凡弑君者 雖在亂臣賊子 亦有發政施仁 以回天意 以安有衆 今高麗陪臣等 險謀疊詐 至今未寧 設使以逆得之 以逆守之可乎 若以逆爲常 則逆臣繼踵而事之 皆首逆者教之 又何怨哉 禮部移文前去 童子不必赴京 果有賢智陪臣在位 定君臣之分於上 造安民之計於國 雖數十歲不朝 亦何患哉 連歲來朝 又何厭哉 又命勿送處女”

權國事 昌이 上奏하여 入朝를 청하였으나 황제가 허가하지 않았다.<sup>64)</sup>

라고 하여 입조 요청을 거부한 사실만 적고 있다. 그런데 흥무 22년 기사로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있다.

이 해에 高麗·安南·占城·暹羅·眞腊이 入貢하였다. 元의 也速迭兒가 그 임금 脫古思帖木兒를 시해하고 坤帖木兒를 세웠다. 고려도 그 임금 禿를 폐하고 또 그 임금 昌을 폐하였다. 安南의 黎季犛復도 그의 군주 日焜를 시해하였다.<sup>65)</sup>

이 기사는 당시 주변국에서 발생한 국왕 폐립과 시해 사건을 흥무 22년 기사 말미에 모아 정리한 것이다. 이것은 당시 명이 고려에서 우왕과 창왕을 폐위한 것을 다른 지역에서 발생한 반역과 시해와 같은 범주에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곧 창왕의 폐위까지도 우왕과 같은 맥락에서 이해한 것으로, 모두 신하의 반역에 따른 것으로 간주되고 있었다.

또한 『명태조실록』에는 당시 고려의 입조 요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다.

고려국에서 다시 사신을 보내 상주하며 權國事 王昌의 入朝를 요청하였다. 상이 허락하지 않고 禮部尙書 李原名에게 말하기를, “고려는 나라 안에 사정이 많아陪臣의 忠逆이 혼잡하고 하는 일이 모두 좋은 계책이 아니다. 矢立을 마음대로 하는 것이 어찌 三韓에서 대대로 지킬 도리이겠는가. 저들이 이미 그 임금을 유폐하고 와서는 童子의 入朝를 말하니 분명 숨은 의도가 있을 것이라 믿을 수 없다. 저들이 만약 반역을 일상적인 일로 여긴다면 모두 뒤따라 할 것이니 人倫이 타락하고 禮義가 없어질 것이다. 너희 禮部는 고려 사신에게 ‘童子가 來朝할 필요가 없으며 과연 그 나라에 현명하고 지혜로운 신하가 있으면 君臣의 분수를 알아 백성과 나라를 평안하게 하면 비록 여러 대에 걸쳐 조회하지 않는다고 책할 것이 없을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비록 해마다 조회한다고 해도 무슨 이익이 있겠는가’라고 유시하라.”<sup>66)</sup>

64) 『明史』 권320, 列傳208 外國1 朝鮮 명태조 22년 “權國事昌奏乞入朝 帝不許”

65) 『明史』 권3, 명태조 22년 “是年 高麗安南占城暹羅眞腊入貢 元也速迭兒弑其主脫古思帖木兒而立坤帖木兒 高麗廢其主禿 又廢其主昌 安南黎季犛復弑其主日焜”

66) 『明太祖實錄』 권197, 명태조 22년 8월 8일(癸卯) “高麗國 復遣使來奏 權國事王昌乞入朝 上不許 謂禮部尙書李原名曰 高麗國中多故 陪臣忠逆混淆 所爲皆非良謀 廢立自由 豈三韓

위의 기사는 앞서 인용한 『고려사』에 인용된 예부 자문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런데 입조를 허락하지 않은 이유는 이전 요청 때와 동일하다. 곧 우왕을 이미 유폐하고 어린 아들을 왕위에 올린 것을 반역 행위로 간주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왕과 창왕이 異姓이라는 내용은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3차 조현 요청에서 거부의 이유가 전과 같이 반역의 혐의였음에도 예부 자문에서 혈통을 문제 삼은 것처럼 제시한 것은 바로 이것이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우는 명분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태조실록』 총서에는 명 태조의 조현 거부를 명분으로 공양왕을 세우는 정계 개편을 단행하였음을 주장하고 있다.

처음에 請親朝使 尹承順 등이 京師로부터 돌아왔는데, 禮部에서 황제의 조칙을 받아 都評議使司에 자문을 보내니, 異姓으로써 王氏의 후사로 삼았음을 책망하고 親朝를 허락하지 않았다.<sup>67)</sup>

위에는 異姓으로 王氏의 후사를 삼은 것이 조현 거부의 이유로 제시되어 있다. 자의적인 왕위 교체를 반역과 폐륜으로 지목했던 홍무제의 실제 언급과는 명확히 차이를 보인다. 이것은 홍무제의 조현 거부를 명분으로 창왕을 異姓으로 규정하는 논리를 만들어낸 것임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위 기사에는 이성계가 判三司事 沈德符, 賛成事 池湧奇, 政堂文學 奚長壽, 評理 成石璘, 知門下府事 趙浚, 慈德府事 朴歲, 密直副使 鄭道傳 등과 興國寺에 모여 공양왕 옹립을 논의한 내용의 도입부로 제시되어 있다. 당시 논의 내용은

禡와 昌은 본디 王氏가 아니므로 奉祀하게 할 수가 없는데, 또 천자의 명령까지 있으니 마땅히 거짓 임금을 폐하고 참 임금을 새로 세워야 될 것이다. 定昌君 瑤는 神王의 7대 손자로서 族屬이 가장 가까우니, 마땅히 세워야 될 것이다.<sup>68)</sup>

---

世守之道哉 彼旣囚其主 來言童子入朝 必有隱謀 不可信也 彼苟以逆爲常事 皆繼踵而爲之 則人倫斁而禮義亡矣 爾禮部 其諭高麗使 童子不必來朝 果其國有賢智之臣 明君臣之分 安民安國 雖數世不朝 亦無所責 不然 雖連歲來朝 亦何益哉”

67) 『太祖實錄』 권1, 總序 “初 請親朝使尹承順等 回自京師 禮部奉聖旨 移咨都評議使司 責以 異姓爲王氏後 不許親朝”

라는 것이었다. 곧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님을 적시하면서 ‘천자의 명령’을 덧붙여 국왕 교체의 명분을 보강한 것이다. 이러한 논의의 결과 공양왕이 즉위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고려사』에 인용된 예부 자문의 내용은 창왕 폐위 이후의 인식에 따라 내용이 변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sup>69)</sup> 이러한 상황은 창왕 조현을 다시 논의하는 과정에서 이미 감지된다. 당시 친조 요청에 앞서 고려 정부는 이를 위한 실질적인 준비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반대 논의가 제기되었다.

昌이 親朝하기 위해 領三司事 洪永通과 判門下府事 李穡·判三司事 沈德符·門下評理 僕長壽·厚德府尹 李種學을 從行官으로 삼았다. 얼마 후 昌의 모친 李氏가 그의 나이가 어린 것을 걱정하여 都堂에 말하여 행차를 중지시켰다.<sup>70)</sup>

창왕의 친조를 위한 수행관으로서 이색은 물론 그의 아들인 이종학도 從事官으로 임명되었다. 이색은 앞서의 사행에서 홍무제를 만났으며 창왕의 즉위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였기 때문에 창왕을 수행하기로 한 것이다. 그런데 왕실이 친조에 반대하여 이를 중지시킨 것으로 되어 있다. 창왕의 친모 이씨는 侍中 李琳의 딸 謹妃로서 우왕 5년 비로 책봉되었고,<sup>71)</sup> 다음해 창왕을 낳았다.<sup>72)</sup>

여기서 창왕의 친조 요청을 두고 정계 내부에 이견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색이 다시 사행을 맡기로 한 것으로 보아, 그는 계속 조현을 통한 창왕의 입지 확보에 노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이성계 세력은 더 이상 창왕의 입조 요청은 무의미하다고 보고 다른 선택을 도모하게 된 것이 아닌가 한다. 모

68) 『太祖實錄』 권1, 總序 “禥昌 本非王氏 不可奉祀 又有天子之命 當廢假立眞 定昌君璣 神王 七代孫 族屬最近 當立”

69) 명의 예부 자문이 조작된 상황에 대해서는 김순자, 2007 앞의 책, 137-143면 참조.

70) 『高麗史』 권137, 列傳50 昌王 1년 9월 “昌將親朝 以領三司事洪永通判門下府事李穡判三司事沈德符門下評理僕長壽厚德府尹李種學 爲從行官 既而 昌母李氏 憫其年幼 言於都堂 寢其行”

71) 『高麗史』 권134, 列傳47 禥王 5년 4월.

72) 『高麗史』 권134, 列傳47 禥王 6년 8월 7일(乙丑).

친의 반대를 내세우고 있는데, 이것은 이성계 세력의 영향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이 당시에 이미 이성계 세력은 창왕을 폐하고 명에서 수궁할 만한 새 국왕을 세우는 방안을 수립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조현 요청이 재차 실패하자 이를 빌미로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양왕 즉위 후 우왕과 창왕은 庶人으로 강등되었다.<sup>73)</sup> 그리고 順安君 昉과 同知密直司事 趙胖을 京師에 보내 공양왕의 즉위를 고하면서 다음과 같이 상주하였다.

高麗國 定昌府院君 臣 王瑤는 삼가 아립니다. 신의 계통은 본국의 시조인 王建의正派인 神王 哱의 7대손입니다. 대대로 이러한 명분을 이어왔는데, 별다른 재주와 덕이 없어서 두려워하며 스스로 처신하여 천수를 다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洪武 22년 11월 15일, 大小 宗戚과 臣僚, 閑良, 耆老 등이 삼가 聖旨의 뜻을 받아들여 나라에 대해 함께 의논하니 “공민왕이 자식이 없이薨逝한 후에 權臣 李仁任 등이 辛禍를 세웠는데, 父子가 실제로는 異姓이어서 王氏의 제사를 주재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이 宗族 중에서 가장 가깝고 연장자라 하여 恭愍王妃 安氏의 명을 받아들여 신에게 임시로 나라를 다스려 제사를 계승하게 하였는데, 신이 進退가 모두 어렵게 되어 몸 둘 곳이 없었습니다. 삼가 보건대, 흥무 7년(1374)에 이인임이 다른 성씨를 제멋대로 세운 아래로 정치와 교화가 방향을 잃고 습속이 부박해졌으니, 신은 원컨대 聖化를 점차 갈고 닦아서 진실하고 순박함을 회복하고자 합니다. 삼가 바라건대 황제께서 신이 親朝하여 대면하여 아뢰는 것을 허락해주시어 한 나라의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십시오.<sup>74)</sup>

이 헌의 주체는 공양왕이다. 앞서 창왕이 즉위할 때에는 일차로 우왕의 명의로 손위를 청하였지만, 이번에는 공양왕 자신이 상주한 것이다. 이것은 공민왕

73)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1년 11월 “降禡昌爲庶人 流李琳及子貴生 女婿柳琰 崔濂外孫女婿盧龜山 媞李懃于遠地”

74)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1년 11월 26일(庚寅) “高麗國定昌府院君 臣王瑤 謹奏 臣係本國始祖王建正派 神王 哱七代之孫 世襲前項名分 別無才德 競懼自處 期盡天年 洪武二十二年十一月十五日 大小宗戚臣僚閑良耆老等 欽奉聖旨事意 共議於國 以恭愍王無子薨逝之後 權臣李仁任等所立辛禍 父子 實爲異姓 而王氏之祀 不可無主 乃以臣於宗族之屬 爲近且長 啓奉恭愍王妃安氏之命 俾臣權國 以承祭祀 臣 進退俱難 措身無地 竊見 洪武七年李仁任等 擅立異姓以來 政教乖方 習俗浮薄 臣願使之漸磨聖化 以復眞淳 欽望聖慈 許臣親朝面奏 以安一國之民”

에게 아들이 없으며, 우왕과 창왕이 왕씨가 아니라는 명분에 따른 것이다. 결과적으로 공양왕의 즉위는 ‘自立’이 된다.

『명태조실록』에는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정리되어 있다.

고려가 사신을 보내 말하기를, “국왕 王昌이 王氏의 후예가 아니며 실은 辛肫의 아들인 禍의 아들이라 나라의 人民이 信服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따로 王氏의 종친 定昌國院君 王璫를 구하여 맞이해 세워 왕위를 계승하고 王氏의 후예를 이어가도록 했습니다. 옆드려 바라건대 朝廷에서 청한 바를 허락해 주십시오”라고 하였다. 上이 禮部尙書 李原名에게 유시하기를, “고려는 산과 바다가 막혀 있고 그 사람이 거짓이 많다. 지금 異姓을 폐출하고 王氏의 宗親을 택해 세웠다고 하는데 전에 와서 童子가 入朝한다는 것을 내가 들어주지 않은 것은 반드시 권력을 잡은 자가 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는데, 지금 그 정세가 드러났다. 또한 그 眞僞를 알 수 없으니 만약 과연 本國의 臣民이 추대한 것이라면 또한 그들이 스스로 한 것을 들어줄 것이요, 혹여 음모를 꾸며 거짓으로 세운 것이라면 하루아침에 바뀌어 모두 虛妄하게 될 것이니 반드시 일어날 화를 예측할 수 없는데, 모두 스스로 취한 것이다. 너는 마땅히 자문을 갖추어 그 나라 사람들이 알도록 하라”라고 하였다. 遼東都指揮使司에게 조서를 내려 모든 고려 사람으로 境內에 옮겨오는 자는 금하지 말도록 하였다.<sup>75)</sup>

위에서 홍무제는 공양왕으로의 교체에 대해서도 의혹을 거두지 않았다. 앞서 창왕의 친조를 요청했던 고려가 갑자기 창왕이 왕씨의 후예가 아니라며 축출하고 새로 공양왕을 세웠기 때문에 앞서의 의혹이 다시 확인되었다는 생각을 하고 고려에서 큰 분란이 생길 것을 대비하였다. 당시 명은 국왕을 교체한 주체가 이 성계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다.<sup>76)</sup>

주목되는 것은 홍무제가 앞서 창왕의 임조를 불허한 이유를 권신의 행위라고

75) 『明太祖實錄』 권199, 명태조 23년 1월 19일(癸未) “高麗遣使來言 國王王昌 非王氏后 實辛肫子禍之子 國中人民 多不信服 故別求王氏宗親定昌國院君王璫 迎立嗣位 以續王氏之后 伏望朝廷允所請 上諭禮部尙書李原名曰 高麗限山隔海 其人多詐 今云 廢黜異姓 擇立王氏宗親 則前者來言童子入朝 吾不聽者 意必執國政者所爲 今其情見矣 且其眞僞莫知 若果爲 本國臣民所推 亦聽其自爲儻 陰謀詐立 一旦變更 盡爲虛妄 必將禍起不測 皆自取也 爾宜備 咨其國人知之 詔遼東都指揮使司 凡高麗國人于境內懲遷者 勿禁”

76) 『明太祖實錄』 권198, 명태조 22년 12월 “是歲 高麗李成桂廢其主王昌 而立定昌國院君王璫” 『明史』 조선전에도 같은 내용이 보인다.

보았기 때문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이다. 곧 홍무제는 공양왕 즉위에 대한 상주문이 올라와 혈통 문제를 제시하기 전에 창왕의 혈통 문제는 인지하지 않고 있었던 것이다. 여기서도 『고려사』에 수록된 예부 자문이 변조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홍무제는 이러한 의혹에도 불구하고 공양왕의 즉위 자체에 대해서는 크게 부정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 홍무 24년 3월 홍무제는 조서를 내려 고려에서 말을 구매하도록 하였고, 공양왕은 8월에 1,500필을 구매하여 보냈다.<sup>77)</sup> 이에 대해 홍무제는

三韓의 君臣이 悖亂하여 이에 二紀가 지났다. 지금 王瑤가 嗣立하니 이내 王氏의 苗裔로 마땅히 사신을 보내 그를 위로해야 할 것이다.<sup>78)</sup>

라 하여 공양왕이 왕씨의 후예로 즉위한 사실을 인정하였다. 홍무제가 우왕의 손위 요청과 창왕의 친조 요청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을 고수한 것에 비추어 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홍무제의 태도가 바뀐 배경을 정확히 판단할 수는 없으나 새로 즉위한 공양왕이 元과 연계가 없다는 점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홍무제는 지속적으로 고려가 거짓이 많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것은 공민왕대 이후 고려의 외교가 親明과 親元을 오간 것과 무관하지 않다. 특히 우왕은 즉위 초 北元의 연호를 사용하는 등 명과 거리를 두었다가 동왕 11년에 명의 책봉을 받았고, 다시 14년에 요동 정벌을 도모하였다. 따라서 우왕이나 그 아들 창왕에 대해서도 불신이 커졌을 것이다. 아울러 여기에는 집정자들의 권력 농단이 개재되어 있다고 의심하였다.

그런데 공양왕은 신종의 후예이기 때문에 고종·원종 이후<sup>79)</sup> 원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던 국왕들과는 차이가 있었다. 이 점에서 홍무제는 공양왕의 즉위

77) 『明史』 권320, 列傳208 外國1 朝鮮 명태조 24년 3월 “詔市馬高麗 八月 權國事瑤進所市馬千五百匹”

78) 『明史』 권320, 列傳208 外國1 朝鮮 명태조 24년 8월 “帝曰 三韓君臣悖亂 二紀於茲 今王瑤嗣立 乃王氏苗裔 宜遣使勞之”

79) 고종은 뒤에 원으로부터 ‘忠憲’이라는 시호를, 원종은 ‘忠敬’이라는 시호를 각각 받았다.

로 고려가 확실하게 명에 복속할 것으로 기대할 수 있었다. 실상 이성계 세력이 굳이 신종의 후예를 출색해 옹립한 것도 이러한 조건과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홍무제 또한 공양왕에 대해 “왕씨의 후예”임을 적시하고 사신을 보내도록 하였다. 따라서 공양왕 정권도 명의 인정을 확고하게 받아냄으로써 왕권을 안정시키고자 했는데, 그 방안으로 추진된 것이 바로 세자의 朝見이다.

## 2) 공양왕 세자의 朝見

공양왕이 즉위한 후 왕권을 안정시키는 움직임이 적극화되었다. 공양왕은 즉위와 함께 모친을 福寧宮主로 추존하고 盧氏를 왕비로 봉하여 順妃로 삼았으며, 長子인 定城君 瞻을 세자로 삼은 후 경내에 故宥를 반포하였다.<sup>80)</sup>

이에 상응하여 우왕과 창왕의 국왕 위상에 수반되었던 제반 의례를 폐지하였다. 우왕의 어머니의 능인 懿陵을 훼철한 것은 그 예이다.<sup>81)</sup> 뒤이어 강릉에 안치되었던 우왕과 강화에 안치되었던 창왕을 주살하였다.<sup>82)</sup> 그리고 공양왕이 孝思觀에 가서 태조에게 이 사실을 고하였다.<sup>83)</sup> 앞서 우왕을 안치하며 승격했던 黃驪府도 驪興郡으로 환원되었다.<sup>84)</sup>

한편 공양왕 정권의 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후계구도의 확립이 필요하였다. 공양왕 2년 2월 세자를 위한 서연을 열었고 趙浚·徐均衡·李至·姜淮伯을 师傅로 삼았다.<sup>85)</sup> 이듬해에는 前政堂文學 李元紘의 딸로 世子妃로 삼았다.<sup>86)</sup>

또한 당시 한양으로 천도해 있던 공양왕은 다시 개경으로 돌아가면서 세자로

80)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1년 11월 16일(庚辰) “御正殿 受朝聽政 尊母王氏 爲福寧宮主 封妃盧氏 爲順妃 長子定城君瞻 爲世子 宥境內”

81)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1년 12월 8일(壬寅) “撤禫母懿陵”

82)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1년 12월 14일(戊申) “司宰副令尹會宗 上疏 請誅禫昌 (중략) 王曰 禫多殺無辜 宜其自及 明知申事李行下旨 遣政堂文學徐鈞衡于江陵 誅禫 藝文館大提學柳均于江華 誅昌”

83)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1년 12월 29일(癸亥) “王詣孝思觀 以誅禫昌 告于太祖”

84) 『高麗史』 권56, 地理1 黃驪縣 “恭讓王元年 復降爲驪興郡”

85) 『高麗史』 권45, 世家45 恭讓王 2년 2월 6일(庚子) “世子 開書筵 以門下評理趙浚 商議門下徐均衡 商議密直提學李至 密直使姜淮伯 爲師傅”

86)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2월 20일(丁丑) “以前政堂文學李元紘女 爲世子妃”

하여금 陽陵을 참배하도록 하고, 이어 孝慎殿에 제사한 후 還都를 고하였다.<sup>87)</sup> 양릉은 神宗의 능이며, 효신전은 공양왕의 아버지 三韓國大公의 貞影을 모신 전각으로 陽陵寺에 설치되어 있었다. 곧이어 도평의사사는 順妃와 세자의 책봉례를 행할 것을 청하였다.<sup>88)</sup> 이러한 일련의 조치들은 공양왕의 후계구도 확립을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리고 세자의 위상을 화증하는 방안으로 朝見이 논의되었다. 공양왕 3년 7월 禮曹判書 韓理 등은 다음과 같이 상소하였다.

지금 세자로 하여금 朝見하게 하였는데, 신 등이 가만히 생각건대 전하께서 즉위한 지 3년에 朝廷에서 비로소 사신을 보내 말 10,000필을 사고자 하는데, 국가가 보낸 것이 2,000필에 미치지 못합니다. 갑자기 세자가 입조했는데, 만약 조정이 지체되어 늦은 것을 책망하면 세자가 장차 어찌 응대하겠습니까. 바라건대 전하께서는 다시 신료들로 하여금 논의하여 시행하게 하십시오.<sup>89)</sup>

위에서 한리 등은 명에서 요구한 말을 제대로 조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세자가 입조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다시 논의할 것을 청하였다. 여기서 앞서 세자 조현에 대한 논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고려사』에는 이에 대한 기사를 찾을 수 없다.

주목되는 것은 이 시기에 바로 세자의 책봉례가 진행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공양왕 3년 3월 도당의 건의로 책봉례를 시행하기로 결정하였고, 이에 따라 준비가 진행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왕실 위상을 높이기 위한 의례와 병행되었는데, 7월에 王大妃와 國大妃, 順妃의 3대 祖考에게 追謚하는 조치도 있었다.<sup>90)</sup> 또한 중궁의 책봉례도 함께 진행되었기 때문에 먼저 순비의 册印을 내려주었다.<sup>91)</sup> 그

87)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2월 24일(辛巳) “命世子 謁陽陵 仍祭孝慎殿 告還都”

88)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3월 3일(庚寅) “都評議使司 請行順妃及世子冊封禮 從之”

89)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7월 14일(己亥) “今令世子朝見 臣等 竊以謂 殿下卽位三歲 朝廷始遣使 購馬萬匹 國家所遣 不滿二千匹 遽以世子入朝 若朝廷責遲緩 世子將何以對 願殿下更令臣僚擬議施行”

90)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7월 21일(丙午) “追謚王大妃 國大妃 順妃三代祖考”

91)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8월 9일(癸亥) “遣評理柳曼殊 知密直盧嵩授順妃冊印”

리고 8월에 세자에게 册印을 내려주었고,<sup>92)</sup> 백관이 箋을 올려 이를 하례하였 다.<sup>93)</sup> 세자는 太廟에 참배하여 책봉을 알렸다.<sup>94)</sup>

이로 보아 세자 조현은 세자 책봉에 수반하여 그 위상을 확증하기 위한 조치로 추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여기에는 창왕 입조 요청 때와는 다른 명의 우호적인 입장이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홍무제는 宦者 韓龍·黃禿蠻 등을 보내어 말 10,000필과 환관 200인을 요구하였다. 이 때 황제의 명에 따라 예부에서 보낸 자문에서는

三韓은 멀리 동쪽 바다 밖에 있어 산물을 내게 바치는 것도 없고 사람을 내가 쓰는 것도 없다. 천명을 받아들여 稱臣하는데 무엇으로 신표를 삼을 것인가. 나라가 부유하고 백성이 조밀하면 이에 필요한 것을 찾아서 교역하더라도 과하지는 않을 것이다.<sup>95)</sup>

라 하였다. 곧 홍무제가 말의 교역과 閹人 선발을 명에 대한 사대의 신표로 제시한 것이다. 이것은 창왕 입조 요청 때와는 달리진 태도로서, 고려에서도 명과의 관계를 적극화할 단서가 마련된 것이었다. 세자 조현은 이러한 분위기에 편승하여 공양왕의 후계 구도를 보증 받을 수 있는 방안으로 모색된 것이다.

고려는 명의 요구에 응하여 6월에 判繕工寺事 楊天植을 京師로 보내어 말 1,500필을 진헌하였다.<sup>96)</sup> 또한 8월에도 判內府寺事 金之鐸을 보내 말 2,500필을 현상하였다.<sup>97)</sup> 이러한 우호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세자의 입조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한편 한리 등의 재고 요청에 공양왕은 도당에 내려 논의하게 하였는데, 재론

92)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8월 15일(己巳) “遣贊成事偰長壽 錫世子冊印 宴群臣”

93)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8월 16일(庚午) “百官上箒 賀冊世子”

94)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8월 25일(己卯) “世子謁大廟 告受封冊 且告築城” 여기서 축성은 丁夫를 징발하여 경도의 내성을 쌓는 것을 말한다. 『高麗史』 권46, 恭讓王 3년 8월 26일(庚辰) “發京畿交州西海道民丁及諸道僧 築京都內城 命判三司事裴克廉 監之”

95)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4월 25일(壬午) “三韓 遠在東溟之外 產無我供 人無我用 受命稱臣 以何爲信 國富民稠 於斯需索交易 不爲過矣”

96) 『高麗史節要』 권35, 恭讓王2 恭讓王 3년 6월 “遣判繕工寺事楊天植 如京師 獻馬一千五百匹”

97)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8월 19일(癸酉) “遣判內府寺事金之鐸 如京師 獻馬二千五百匹”

내용 역시 나타나지 않는다. 다만 9월에 경연에 나간 공양왕은 門下舍人 安魯生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지금 세자가 朝見하는 데 너를 書狀官으로 삼는다. 대개 네가 郎舍가 되어 檢察하게 하려는 것이다. 法令이 비록 엄하지만 일행에 사람 수가 많으니 분명 이익을 탐해 貿易하여 中國이 웃음거리가 되는 자가 있을 것이다. 마땅히 엄격히 금지하라.<sup>98)</sup>

위에서 공양왕은 세자 조현에 편승하여 무역을 벌이는 일을 금하도록 당부하고 있다. 여기서 도당 논의를 통해 재차 세자 조현이 결정된 것을 짐작할 수 있다. 곧이어 諫官 許應 등도 세자가 조현하는 일행에 상인을 포함시키지 말 것을 요청하였다.<sup>99)</sup>

9월에 마침내 세자의 조현이 실행되었다.

세자 矢을 보내 京師에 가서 신년을 賀禮하게 하였다. 侍中 沈德符, 贊成事 契長壽, 密直副使 閔開 등이 따라갔다. 그 表箋과 奏啓에는 모두 ‘長男 定城君 矢’을 칭하였다.<sup>100)</sup>

위에서 세자 석은 공양왕의 ‘장남’이라는 것과 ‘定城君’이라는 작호만 지칭하고 ‘世子’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명으로부터 공양왕의 고명을 받지 않았고 세자의 고명도 받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이다.

조현을 마친 세자는 이듬해 3월 通事 李玄이 먼저 還國 기일을 알려 왔고,<sup>101)</sup>

98)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9월 2일(丙戌) “御經筵 謂門下舍人安魯生曰 今世子朝見 以爾 爲書狀官 盖爾爲郎舍 欲以使檢察也 法令雖嚴 然一行人數既多 必有貪利貿易爲中國所笑者 宜痛禁之”

99)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9월 20일(甲辰) “諫官許應等 上疏曰 殿下 慨念商賈之弊 遣使禁斷 實斯民務本捨末之秋也 今遣金仁用等商賈之徒 前去北平賈羊 竊恐非殿下崇節儉之美意也 況當世子朝見之日 商賈之徒 繼踵而行 又違殿下爲萬民 遣世子朝覲之意 臣等 恐中國之人 將以爲世子今日之行 欲階商販之路也 且賈羊一事 非今日急務 願殿下母令仁用等有此行也 夫完城郭練土卒 實先王安不忘危 理不忘亂之道也”

100)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9월 22일(丙午) “遣世子矢 如京師 賀正 侍中沈德符 贊成事契長壽 密直副使閔開等從行 其表箋奏啓 皆稱長男定城君矢”

101)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3월 10일(辛卯) “通事李玄 回自京師 報世子還期 賜

공양왕은 동생 瑪와 이성계로 하여금 黃州로 나가 세자 일행을 맞이하게 하였다. 그런데 이 때 이성계는 해주에서 사냥하다 말에서 떨어져 큰 부상을 입었다.<sup>102)</sup>

얼마 후 세자 일행이 돌아왔는데, 당시 상황을 정리한 『고려사절요』 기사는 다음과 같다.

왕세자가 京師로부터 돌아오니, 都堂이 金郊까지 영접하고 백관들도 宣義門 밖에 서 영접하였다. 황제가 특별히 총애와 대우를 더하여 세자를 公侯의 다음에 위치시켰으며, 內殿에서 연회 베풀기를 무릇 다섯 차례나 하였다. 또한 관부들에 명하여 날마다 연회를 열어 위문하게 하였고, 황금 2錠과 백금 10정, 表裏 100필을 하사하였으며, 따르던 관원 이하에게도 은과 비단을 차등 있게 하사하였다.<sup>103)</sup>

위에서 홍무제는 세자의 位次를 높게 책정하여 우대의 뜻을 나타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조선 태종대 讓寧大君의 세자책봉과 함께 실행된 조현 기사에서도 확인된다. 당시 세자를 수행한 李茂는 李玄을 시켜 예부상서에게 말하기를,

太祖皇帝께서 우리나라에 冠服을 주신 詔書에, “國王의 1品은 中朝 3品에 준한다”고 하였고, 辛未年에 고려 세자 定城君이 入朝하였을 때에 位次가 六部尙書 다음에 있었다.<sup>104)</sup>

라고 하였다. 신미년은 홍무 24년, 공양왕 3년으로, 이무는 이를 즐거워 조선 세자의 위치를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이를 통해 당시 홍무제가 고려 세자에 대한 예우가 각별한 것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곧 홍무제가 공양왕의

玄麿馬一匹 國大妃王妃世子嬪 亦皆厚賜”

102)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3월 17일(戊戌) “命弟瑪 及我太祖 出迎世子于黃州 太祖 瞴于海州 墜馬病篤”

103) 『高麗史節要』 권35, 恭讓王2 恭讓王 4년 3월 24일(乙巳) “王世子至自京師 都堂迎于金郊 百官班迎于宣義門外 帝特加寵待 序世子於公侯之次 賦宴內殿者凡五 又命千官 日開宴慰 賦黃金二錠 白金十錠 表裏百匹 從官以下 賦銀帛有差”

104) 『太宗實錄』 권15, 태종 8년 4월 2일(庚辰) “太祖皇帝賜我國冠服之詔 有曰 國王一品 準 中朝三品 在辛未年高麗世子定城君入朝 位在六部尙書之次”

세자조현을 고려와의 관계 정립에 활용할 의도를 보여준다.

따라서 고려도 대명외교에 더욱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 세자가 조현을 진행하는 기간인 10월에는 判軍器寺事 金久住를 京師로 보내 火者 20인을 바쳤다.<sup>105)</sup> 12월에는 전 牧使 曹仲生을 京師로 보내 말 1,000필을 바쳤다.<sup>106)</sup> 이에 홍무제는 동년 12월 宦者 前元承徽院使 康完者篤 등을 보내

三韓의 땅에서 君臣이 惕亂한 것이 이제 20여 년이나 되었다. 다행히도 땅을 다투는 전투가 벌어지지 않아 백성들이 도시와 시골에서 편안하였다. 작년에 와서 고하기를, “王氏의 후손이 이 백성의 군주가 되었다”라고 하니, 이제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가서 노고를 치하하고 정사를 어떻게 하는지를 살펴보게 한다.<sup>107)</sup>

라고 하여 공양왕의 즉위를 인정하는 태도를 보였다. 결국 세자 조현은 세자의 위상을 확증하는 동시에 공양왕의 즉위를 추인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명과 고려 사이의 외교관계도 안정화되었다.

공양왕은 세자가 돌아온 후 홍무제가 세자에게 내려준 金 2정과 銀 7정을 都堂에 내려 國用에 보충하도록 하였고,<sup>108)</sup> 賞春亭에 가서 세자에게 연회를 베풀었다.<sup>109)</sup> 세자는 積慶園과 孝慎殿을 알현하였다.<sup>110)</sup> 적경원은 공양왕의 4대를 추존하여 만든 陵園이다.

이어 6월에는 공양왕의 誥命을 요청하게 되었다. 이 글에서 공양왕은

105)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10월 26일(己卯) “遣判軍器寺事金久住 如京師 獻火者二十人”

106)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12월 1일(癸丑) “遣前義州牧使曹仲生 如京師 獻馬一千匹”

107)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3년 12월 12일(甲子) “三韓之地 君臣悖亂 二紀于茲 幸爾無爭城野之戰 民安市鄉 舊歲來告 乃王氏苗裔 君主斯民 今特遣使往勞 以觀署政如何”

108)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3월 26일(丁未) “王 以帝賜世子金二錠 銀七錠 下都堂 以充國用”

109)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3월 28일(己酉) “幸賞春亭 宴勞世子”

110) 『高麗史』 권46, 世家46 恭讓王 4년 4월 4일(乙卯) “世子 謁積慶園 及孝慎殿”

홍무 22년 11월 15일에 공민왕의 뒤를 이어 국사를 임시로 맡아 안정시켰습니다. 당시 順安君 王昉 등을 차정하여 奏本을 實封하여 가지고 가서 주달하게 한 것이 이제 4년에 이르렀습니다. 신등이 엎드려 보건대 임시로 나라 일을 맡은 아래로 성실하게 事大하여 더욱 공손하고 부지런히 하였으며, 정치와 교화를 닦고 백성들을 본업에 편안하게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위를 계승하라는 분명한 명을 받지 못하여 온 나라가 황망해 하며 우러러 德音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엎드려 바라건 대 천자께서 王爵을 계승하여 봉한다는 분명한 명령을 하사해주시어 먼 지방 사람들 의 마음을 위로해 주십시오.<sup>111)</sup>

라고 하여 정식으로 국왕으로 책봉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여기서 공양왕은 자신이 공민왕의 뒤를 계승했음을 분명히 하였는데, 이는 우왕과 창왕을 신돈의 후예로 지목한 데 따른 것이다. 그리고 창왕의 조현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명이 공양왕 세자의 조현을 받아들인 것은 공민왕 피살 이후 계속 제기된 신하들의 폐역 혐의를 해소하는 의미가 있었다. 결국 세자의 조현은 공양왕의 계승을 인정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점에서 공양왕의 책봉을 위한 토대가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신 일행이 蕭州에 이르렀을 때 공양왕이 폐위되었다는 것을 듣고 돌아옴으로써 고명 요청은 실현되지 못하였다.<sup>112)</sup> 그리고 이를 대신하여 趙胖 등이 이성계의 즉위를 상주하였다.<sup>113)</sup> 고명을 위한 사신이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공양왕이 폐위되고 이성계가 즉위한 것은 당시 왕위 교체가 급격히 진행된 정황을 보여준다.<sup>114)</sup>

이는 공양왕이 홍무제의 고명을 받을 경우, 이성계 등의 권력 유지가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한 결과로 보인다. 자신들이 주도한 창왕 폐위와 공양왕 즉위라

111) 『高麗史』 권46,世家46 恭讓王 4년 6월 27일(丁丑) “於洪武二十二年十一月十五日 承恭愍王後 權署國事 以定人心 當差順安君王昉等 齋擎實封奏本 已經奏達 及今四年 臣等伏見 權國以來 事大之誠 愈加恭謹 政教修明 人民安業 乃緣未蒙襲爵明命 舉國遑遑 願望德音 伏望聖慈 特賜明降 襲封王爵 以慰遠人之心”

112) 『高麗史』 권46,世家46 恭讓王 4년 6월 27일(丁丑) “遣門下評理金湊 如師 表請誥命 (중략) 漸至蕭州 聞王廢 乃還”

113) 『明太祖實錄』 권221, 明泰조 25년 9월 12일(己丑).

114) 공양왕대 이성계의 정치적 활동에 대해서는 별고에서 자세히 논할 것이다.

는 일련의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자 조현을 추진했지만 홍무제의 적극적인 우대로 인하여 국왕으로서 공양왕의 위상이 안정되고, 연이어 고려 조정이 공양왕의 고명을 요청하자 전격적으로 폐위를 단행한 것이다.

따라서 이성계 세력은 공양왕의 명분을 뒷받침하는 세자 조현에 대해 그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세자 조현을 위한 논의나 결정 과정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세자 조현을 추진했다가 공양왕을 폐위시키는 이성계 세력의 모순적 행위를 드러나지 않도록 하려는 의도적인 편집의 결과로 보인다. 다만 세자 조현의 경험은 조선 태종대 진행된 세자 조현의 전례가 되었기 때문에 명의 우대와 같은 내용은 기록에 남게 되었다.

#### 4. 맺음말

이상에서는 고려말 공양왕대에 진행된 世子 朝見을 그에 앞서 추진된 창왕의 親朝 문제와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그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위화도회군을 단행한 曹敏修와 李成桂는 무모한 정벌을 문제로 삼아 우왕을 폐위하고 9세의 창왕을 즉위시켰다. 우왕은 유폐되었지만 前王으로서 예우를 받았으며, 그 혈통에 대한 문제는 제기되지 않았다.

고려는 우왕의 명의로 명에 표문을 보내 遷位에 대한 허가를 구하였다. 창왕의 즉위는 우왕의 정통성을 인정하는 전제에서 이루어진 것이었다. 그러나 홍무제는 우왕의 유폐를 인지하고 이것이 이성계의 모의에 의한 것이라고 보면서 요청을 거부하였다. 명은 우왕대에도 禿君을 문제삼아 공민왕에게 시호를 주지 않고 통교를 거절하는 등 강경한 태도를 보인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고려가 창왕의 襲封을 허락받기 위해 도모한 것이 바로 親朝였다. 기록상 창왕의 친조 요청은 세 차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첫 번째는 창왕 즉위년 10월에 李檉이 賀正使로 가서 홍무제를 만났을 때 친조를 요청한 것이다. 이 사행에는 李芳遠이 서장관으로 참여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이색 열전에 나오는 것이며, 연대기에는 창왕의 官爵과 監國을 요청한 것으로 되어 있다.

홍무제는 감국 요청을 문제 삼지 않고 창왕의 즉위를 묵인하는 태도를 보였다. 대신 과거 원이 지배했던 탐라를 활용하려는 의도를 보였다. 하지만 친조와 관련된 언급은 보이지 않는다. 당시 친조 요청은 창왕 폐위 후 창왕의 혈통 문제로 거부된 것처럼 설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처음부터 친조를 요청했다가 실패한 것으로 정리한 결과이다. 『龍飛御天歌』에서 감국 요청보다 먼저 친조 요청이 있었던 것으로 제시한 것은 이러한 이해를 뒷받침한다.

한 달 뒤인 11월 친조를 요청하는 사신이 별도로 파견되었다. 여기에는 이성계의 장자인 李芳雨가 副使로 참여하였다. 이방우와 이방원의 사행 참여는 창왕의 왕권 안정을 위한 대명외교에 이성계 세력이 깊이 관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창왕의 친조는 명이 정통성을 보증하는 것이고 이를 초래한 위화도회군을 정당화하는 의미가 있었다. 이에 수반하여 요동 정벌의 책임자로서 崔瑩를 처형하고 이를 명에 알렸다. 그러나 명은 창왕의 옹립을 신료들의 반역으로 간주하며 친조를 허락하지 않았다. 그리고 고려의 일에 중국이 간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고수하였다. 이것은 우왕의 손위 요청을 거부한 것의 연장선에 있었다.

한편 앞서 떠났던 이색 일행이 돌아올 때 홍무제는 자신의 아들과 고려 명문가의 딸의 혼인을 추진할 의사를 전했다. 이는 국왕의 立廢에 관여하지 않는다는 원칙에도 불구하고 고려에 대한 영향력 확대를 모색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고려는 창왕 1년 6월 尹承順 등을 보내 다시 창왕의 친조를 요청하였다. 그런데 윤승순이 돌아와 전한 예부의 자문에는 홍무제가 조현을 불허한 이유가 王氏 가 시해되어 후사가 끊긴 후 異姓으로 왕을 삼았다는 것으로 적시되어 있었다. 이는 우왕과 창왕이 신돈의 후예라는 인식과 연결된다.

그런데 『명태조실록』에는 전과 동일하게 반역 행위를 이유로 친조를 허락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홍무 22년 기사 말미에는 당시 주변국에서 발생한 시역 내지 폐립 사건을 모아 정리했는데, 여기서 우왕과 창왕의 폐위를 적시하였다. 이는 명이 창왕의 폐위 역시 신하의 반역으로 간주했음을 보여준다. 이에 비추어 『고려사』에 인용된 예부 자문의 내용은 창왕 폐위 후 제기된 辛禡辛昌論을 투영하여 변조된 것으로 판단된다.

당초 고려는 이색을 보내기로 했으나 謹妃의 반대로 논의가 중지되었다가 다

시 윤승순이 파견되었다. 이는 창왕의 친조 요청을 두고 정계 내부에 이견이 있었음을 보여준다. 입조를 통해 창왕의 위상 확보에 노력하는 기조를 이색 등이 유지하고 있었음에 대해 이성계 세력은 앞선 조현 요청이 실패한 것을 빌미로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세우려는 움직임을 본격화한 데 따른 것이었다.

공양왕은 즉위 후 자신의 명의로 표문을 보내 우왕과 창왕이 공민왕의 후예가 아니며 자신이 왕씨의 후손으로 즉위했음을 알렸다. 홍무제는 이번에도 그 진위에 의혹을 가지면서도 本國의 臣民이 추대한 것이라면 받아들이겠다는 입장은 보였다. 홍무제의 태도가 바뀐 것은 이전의 국왕과 달리 그가 神宗의 후예로서 원과 연계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그의 즉위로 고려가 확실하게 명에 신속할 것으로 기대한 것이다.

공양왕은 즉위 후 선대를 추존하고 세자를 책봉한 데 이어 書筵을 열고 세자비를 간택하는 등 후계 구도를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세자의 朝見 또한 명의 인정을 통해 왕권을 안정시키기 위한 것이다. 세자 조현 논의는 사료에 직접 나타나지 않지만 공양왕 3년 7월 韓理의 상소에서 조현이 결정된 사실이 확인된다. 당시 세자의 책봉례가 진행되고 있어 이에 수반하여 조현이 추진된 것을 알 수 있다.

9월에 마침내 공양왕 세자의 조현이 실행되었는데, 정식 책봉을 받기 전이기 때문에 表箋과 奏啓에는 세자는 모두 ‘長男 定城君 疾’을 칭하였다. 홍무제는 세자에게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이는 조현을 대고려관계에 적극 활용하려는 의도를 반영한다. 실제 홍무제는 12월에 사신을 보내 ‘왕씨의 후손을 세운 것’에 대해 노고를 치하하였다. 이것은 공양왕의 즉위를 추인한 것이다. 세자가 이듬해 3월에 돌아오자 6월에 공양왕의 고명을 요청하게 된 것은 이러한 맥락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사신 일행이 肅州에 이르렀을 때 공양왕이 폐위됨으로써 고명 요청은 실현을 보지 못하였다. 이것은 당시 왕위 교체가 전격적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성계 세력은 창왕 즉위와 폐위, 그리고 공양왕 즉위라는 일련의 과정을 정당화하기 위해 세자 조현을 추진하는 데 실무 혹은 주역으로서 깊이 관여하면서 정치적인 기반을 확대하였지만 공양왕 고명까지 실현될 경우 권력 유

지가 어렵다고 보고 전격적으로 폐위를 단행한 것이다. 이를 합리화하기 위해서는 ‘고려의 中興’을 명분으로 단행되었던 공양왕의 즉위의 논리를 무력화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인정한 홍무제의 조처 또한 그 의미를 축소할 필요가 있었다.

공양왕의 명분을 뒷받침하는 세자 조현에 대한 해당 논의나 결정 과정이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은 고려 왕조의 중흥을 내세웠던 이성계 세력의 모순적 행위를 가리기 위한 것이었다. 이성계 즉위의 명분이 된 ‘易姓革命’에 대한 부정적 의혹을 줄이기 위해서는 그 자신이 깊이 관여한 창왕과 공양왕 즉위에 대한 역할을 축소해야 했으며, 이를 확증하기 위한 국왕 혹은 세자의 조현에 대한 논의가 전면화되는 것을 막아야 했다.

조선초기의 사서에서 공양왕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이 노출되는 것은 이와 궤를 같이 하는 것이다. 국왕 교체의 명분이 된 신우신창론에 비해 고려 왕조 중흥의 논리가 무력화된 것은 조선 왕조 개국에 따른 결과였다. 다만 공양왕 세자 조현의 경험은 불안정한 국왕의 즉위를 후계자 선정과 연계하여 확증하는 유익한 방안으로 간주되었고, 이것은 조선 태종대 세자 조현이 이루어지는 토대가 되었다.<sup>115)</sup>

주제어 : 世子朝見, 洪武帝, 祔王, 昌王, 恭讓王, 李成桂

투고일(2017. 11. 1), 심사시작일(2017. 11. 8), 심사완료일(2017. 11. 21)

115) 이에 대해서는 남지대, 2014 「조선 태종의 권위확충」『奎章閣』 45, 4장 세자의 朝見 참조.

〈Abstract〉

Crown prince's visit to China at the end of Goryeo  
and in the early years of Joseon

- Examination of the King Chang-Wang(昌王)'s failed visit attempt and the crown prince's, son of the King Gong yang-Wang(恭讓王), visit to China -

Yoon Jeong \*

Examined in this article is King Gongyang-wang(恭讓王)s dispatching[朝見] of his son and crown prince(世子) to China, and how such sending was related to the earlier attempt to arrange King Chang-wang(昌王)s Chinjo(親朝) visit to Ming(明). Even after Yi Seong-gye(李成桂) turned his troops around at Wihwa-do(威化島), King Wu-wang(禡王)s legitimacy was not officially challenged, and therefore his son Chang-wang was allowed to be enthroned. But Ming emperor Hongmu-je(洪武帝), under the name of not recognizing the person in throne apparently erected by vassals who killed the former king, denied the Goryeo kings request.

In response, Yi Seong-gye raised the notion of both Wu-wang and Chang-wang being the son of Shin Don(辛禥辛昌論), and under the name of reviving the country, replaced Chang-wang with a new King Gongyang-wang. He then arranged the son of Gongyang-wang, now newly established as the crown prince himself, to visit China and pay respect to the Ming court(朝見). The plan was also set in motion due to the new stance of the Ming emperor who intended to strengthen its control over Goryeo by recognizing the new king and government on the Korean peninsula. Yi and other leaders of Goryeo wanted to stabilize their footing and not to mention their regime by securing Mings authorization of Gongyang-wangs enthronement which would hopefully be accomplished through the meeting between the Ming emperor and the Crown prince of Goryeo. But by the time the envoy arrived at Sukju(肅州), Gongyang-wang too was kicked out of the throne, so the request for the authorization was effectively nullified.

---

\* Associate professor, Chinju National University of Education.

But the attempt itself, arranging a crown prince's visit to China in order to legitimize a weak king's enthronement as well as his naming of his own successor, remained in the minds of the Goryeo people as an effective way of bringing a fixation upon the supposed line of succession. The attempt was repeated in the early days of Joseon too, as we can see from the example of Joseon King Taejong's reign, when a crown prince was sent to China for a similar purpose.

**Key Words :** Crown prince's visit to China(世子朝見), Ming emperor Hongmu-je(洪武帝), King Wu-wang(禡王), King Chang-wang(昌王), King Gongyang-wang(恭讓王), Yi Seong-gye(李成桂)